



# 2016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

2013년이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함.

## I 추진근거

-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(건축행정의 지도·감독)
- 201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(건축기획과-3445-2016.02.18)
- 201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(건축과-6402-2016.03.08.)

## II 점검개요

- 점검대상 : 미사용승인건축물 65개소
  - 2013.12.31.이전 건축허가분 : 56개소
  - 2012.12.31.이전 건축허가분 : 9개소

동별	길음동	돈암동	동선동	동소문동	보문동	삼선동	상월곡동
개소	7	0	5	7	6	6	3
동별	석관동	성북동	안암동	장위동	정릉동	종암동	하월곡동
개소	7	2	4	1	13	2	3

- 점검기간 : 2016.05.30.~2016.06.07. (15일)
- 점검내용
  - ▶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공사진행 사항·유지관리 점검
    - 미사용승인 사유(위법시공, 단순 미신청 등)
    - 행정조치 경위(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)
    - 위법시공 내용 등 관련규정에 위반된 사항

○ 점검방법

- ▶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65개소 : 해당 동 담당공무원 조사

○ 점검결과

- ▶ 미착공 허가건은 허가 취소 및 세움터 전산입력
- ▶ 공사중인 건축물은 공사관리(감리) 철저토록 지도
- ▶ 위법건축물은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

### Ⅲ 향후계획

---

- 2016.06.07. 까지 : 해당동 담당 유지관리 실태 일제점검
- 2016.06.13. 까지 : 현장조사 및 점검결과 중간보고
- 2016.06.20. 이후 :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
- 2016.07.01. 까지 :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최종 점검결과 제출(서울시 건축 기획과)

- 붙임 1. 점검대상 현황 각 1부.  
2. 점검서식 각 1부. 끝.